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참고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6. 11. 6.(금)

덜 짜고 덜 단 식품, 이제 더 다양하게 선택하세요!

-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11.6.~11.26.)
- 저감 표시 대상 대폭 확대(21개 → 223개 식품유형)
- 소스·과자·떡볶이 등 다양한 식품으로 소비자 선택권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존 일부 품목에만 적용하던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를 저감 가능한 **모든 가공식품**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11월 6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 유통 중인 제품의 세부 분류별 평균값 대비 10% 이상, 또는 동일 제조사의 유사 제품 대비 25% 이상 나트륨·당류 함량을 낮춘 제품에 '덜, 감소' 등 표시 가능

식약처는 **나트륨·당류 저감 식품**의 **생산·유통**을 **활성화**해 **소비자**의 **건강한 식품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21년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을 **도입**한 **이후** 주요 나트륨·당류 급원, 업계 수요 등을 고려하여 **21개 식품유형**(나트륨 8개, 당류 14개)으로 확대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 관심과 업계의 표시 대상 확대 요구 등을 반영하여, 다양한 나트륨·당류 저감 식품이 생산·유통될 수 있도록 표시 대상을 **나트륨·당류 저감**이 **가능**한 **모든 가공식품(223개 식품유형)**으로 **확대**한다.

다만, **영양표시 대상이 아닌 식품, 나트륨·당류 관련 별도 제조·가공기준** 또는 **규격**이 **있는 식품 등**은 **제외**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아울러 저감 표시의 기준으로 활용하는 **세부분류별 평균값**은 **식약처**가 **산출·제시***하는 한편 **평균값**이 **제시되지 않은 식품**은 **영업자**가 **직접 산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업계 수요조사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식약처 누리집에 공개 지속

식약처는 앞으로도 **나트륨·당류 저감 식품**의 **생산·유통**을 **활성화**해 **소비자**의 **건강한 식품 선택권**을 **강화**하고, **국민**이 **나트륨·당류**를 **적절히 섭취**하는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에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 26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붙임> 나트륨·당류 저감제품 표시기준 일부개정안 Q&A

담당 부서	식품소비안전국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책임자	과 장	고지훈 (043-719-2252)
		담당자	사무관	민정은 (043-719-2262)

붙임 **나트륨·당류 저감제품 표시기준 일부개정안 Q&A**

Q1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이란?

☞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정하는 규정과는 별도로 시중 유통 중인 제품의 **세부분류별 나트륨·당류 함량**의 **평균값** 또는 **자사유사제품 대비 각각 10%, 25% 이상 줄인 경우 '덜, 감소, 라이트, 줄인' 등**의 용어로 제품에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기준을 말함

Q2 이번 개정의 방향은?

☞ 일부 식품유형(21개)에만 허용하던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를 원칙적으로 **모든 식품유형(223개)으로 확대**하면서, 저감 표시의 **실효성이 낮거나 표시기준 적용이 곤란**한 **일부 유형만 예외**로 명시함

Q3 저감표시의 예외대상은?

☞ **①영양표시 대상이 아닌 식품유형, ②단일 원재료로 제조·가공되는 식품유형, ③나트륨·당류 관련 제조·가공기준 또는 규격을 정한 식품유형, ④대표성 있는 평균값 산출 어려운 식품유형**

구분	제외 식품유형
가. 영양표시 대상에서 해당하지 않는 식품유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른 영양표시 대상에서 해당하지 않는 식품유형
나. 주로 단일 원재료로 제조·가공되는 식품유형	원액두유, 고춧가루, 실고추, 찐쌀, 우유, 환원유, 강화우유, 유산균첨가우유, 유당분해우유, 산양유, 버터유, 농축우유, 탈지농축우유, 어육살, 건어포, 한천, 벌집꿀, 벌꿀, 사양벌집꿀, 사양벌꿀, 로열젤리, 가공화분
다. 나트륨·당류에 대한 별도의 제조·가공기준 또는 규격을 정하고 있는 식품유형	영아용 조제유, 성장기용 조제유,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 당뇨환자용 영양조제식품, 신장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 고혈압환자용 영양조제식품, 수분 및 전해질보충 조제식품, 당뇨환자용 식단형식품, 신장질환자용 식단형식품, 고혈압환자용 식단형식품
라. 대표성 있는 평균값을 산출하기 어려한 식품유형	기타 수산물가공품, 기타가공품

Q4 평균값은 제시되는지?

☞ **세부분류별 평균값**은 **식약처**가 **산출·제시**하되 업계의 수요 등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확대**(매년 50개 내외)할 예정임

단, **평균값**이 **제시되지 않은 식품**은 **영업자**가 **직접 산출 가능.** 이 경우 영업자는 평균값에 대한 **객관적·과학적**인 **근거**를 갖추고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함

Q5 평균값 변경 시 즉시 표시사항을 변경해야 하는지?

☞ 평균값이 새로 게시되거나 변경되어 게시된 날부터 **1년 동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값을 적용할 수 있음

1. 새로 게시한 경우: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업자가 산출한 평균값**
2. 변경하여 게시한 경우: **종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게시한 평균값**

